

## KUCAS (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)

### 1. 개요

<p>■ 정의</p>	<p>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 (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)</p>
<p>■ 개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강제인증이며 국가규격임.</li> <li>- 쿠웨이트로 수출되는 규제대상에 대한 국가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인증임.</li> </ul>
<p>■ 인증기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PAI (Public Authority for Industry) <a href="http://www.pai-kucas.com">http://www.pai-kucas.com</a></li> <li>- Intertek - South Korea <a href="http://korea.intertek-etlsemko.com">http://korea.intertek-etlsemko.com</a></li> </ul>
<p>■ 대상품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기장난감, 가전, 전기, 가스제품, 자동차, 화학, 건축재료, 기타 관련제품</li> </ul>
<p>■ 적용국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KUWAIT</li> <li>- GCC 5개국가들 모두 유사한 규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KUCAS 인증 시 다른 GCC 국가들 (사우디, 오만, 카타르, 바레인, UAE)로의 수출도 일부 국가별 상이한 규격에 대한 TEST만 추가하여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.</li> </ul>
<p>■ 적용규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쿠웨이트 규격</li> </ul>
<p>■ 기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스오븐렌지의 경우 2007년까지 인증 없이 KUWAIT로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KUCAS(PAI)가 2006년 발효된 후 유효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쿠웨이트로 수입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쿠웨이트 규격(KUCAS)을 인증 받도록 규정하였다.</li> </ul>

## 2. 인증기관

쿠웨이트 PAI (Public Authority for Industry) 는 쿠웨이트 산업통상부의 부서로서 2006년 06월 17일부터 ‘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’ (KUCAS)을 실시해오고 있으며, KUCAS 제도를 통해 의무 대상 품목이 쿠웨이트의 기술절차 및 승인 규격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한다. 의무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제조자는 PAI에서 공인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절차를 마쳐야 한다.<sup>1)</sup>

## 3. 인증품목

전기&전지작동 장난감, 분리형에어컨, 가정용&전문가용 비디오/오디오 기기, 가솔린&디젤 엔진(driven up to 10KW), 전자레인지, 냉장고, 진공청소기 등 총 63개의 제품이 의무대상 품목으로 규정되었다.

의무대상 품목은 공정(process), 비공정(non-process) 제품으로 분류된다. 공정제품은 이용되는 재료의 변화와 제조공정에 따라 최종 제품의 성질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 따라서 이 제품들은 고위험품목으로 분류되며 빈번한 적합성검증이 요구된다.

비공정 제품은 저 위험 품목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빈도의 적합성검증이 요구된다.

또한 제품은 1~6개의 그룹으로 범주화되어지는데, 1~3그룹은 비공정제품으로서 전기장난감, 가전, 전기, 가스제품, 자동차이고, 4, 5 그룹은 공정제품으로서 화학, 기타제품이며 6그룹은 화학제품으로서 비공정, 공정 품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.

<http://www.pai-kucas.com/resourcecentre/2120314> 에서 2008년 9월 1일 부로 개정된 규제 품목의 자세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다.

## 4. 인증절차

가.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절차를 통해 인증을 득한다.

### (1) 수출국가에서 진행

제조자 또는 수출업체가 PAI로부터 인정받은 인증/검사 기관(Certification/Inspection Bodies; CIB)를 통해 적합성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.

### (2) 쿠웨이트 현지진행

쿠웨이트 선적 후 PAI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적합성 승인 절차를 완료한다.

나. 쿠웨이트로 들어오는 모든 규제 제품은 쿠웨이트 기술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해야 하며, 아래 두가지 경우로 진행이 가능하다.

---

1) 한국에스지에스(주) [www.kr.sgs.com](http://www.kr.sgs.com)

(1) 수출국가에서 진행

수출국가에 지정된 기관에서 인정한 시험소에서 발급한 성적서와 함께 쿠웨이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적합선언서를 제출한다. 정기적으로 수출이 되는 제품의 경우, 매번 시험하는 것을 생략하기 위해, TER(Technical Evaluation Report)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는 full test 를 통해 발급가능하다. TER은 3년간 유효하다.

(2) 쿠웨이트 현지진행

PAI는 쿠웨이트 선착장에 도착된 제품에서 샘플을 채취하며 PAI 시험소에서 full test 를 실시한다. 시험완료 시 Test Report 가 발행된다. 정기적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, 매번 시험하는 것을 생략하기 위해, TEC(Technical Evaluation Certificate)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는 Full test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. TEC는 2년간 유효하다.

다. 선적 검사

수출되는 제품의 검사는 선적 전 또는 선적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. 선적검사 후 TIR(Technical Inspection Report)가 발급된다.

라. 인증서 발급

PAI는 시험검사 결과 및 TIR을 검토하여 'Clearance Approval' 또는 'Certificate of Conformity' 를 발급한다.

5. Contact

가. PAI

- 홈페이지: <http://www.pai-kucas.com/>
- E-mail: [info@pai-kucas.com](mailto:info@pai-kucas.com)

나. Intertek - South Korea

Rm 603, 6F, Ace Techno Tower V (5),  
197-22, Guro-3Dong, Guro-Gu,  
Seoul, 152-766, Korea

- 홈페이지: <http://korea.intertek-etlsemko.com>
- Tel: (82) 2 775 5255
- Fax: (82) 2 775 5266
- E-Mail: [info.seoul.gs@intertek.com](mailto:info.seoul.gs@intertek.com)
- Contact: Monica Kim / Rachel Lee / Paul Kim